

중국정사조선전 4권, 명사(明史)

명사: 336권으로 구성. 중국 정사(正史)의 하나로, 청(淸)나라의 장정옥(張廷玉) 등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 《명사고(明史稿)》를 원본으로 하여 1735년에 완성. 목록 4권, 본기(本紀) 24권, 지(志) 75권, 표(表) 13권, 열전(列傳) 220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1679년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걸려 편수(編修)된 역사서.

- | | | |
|-------------------|--------------------|--------------------|
| 1. 홍무제, 1368-1398 | 6. 경태제, 1449-1457 | 11. 만력제, 1572-1620 |
| 2. 영락제, 1402-1424 | 7. 성화제, 1464-1487 | 12. 태창제, 1620 |
| 3. 홍희제, 1424-1425 | 8. 홍치제, 1487-1521 | 13. 천계제, 1620-1627 |
| 4. 선덕제, 1425-1435 | 9. 가정제, 1521-1567 | 14. 승정제, 1627-1644 |
| 5. 정통제, 1435-1449 | 10. 융경제, 1567-1572 | |

- 31. 공민왕, 1351-1374
- 32. 우왕, 1374-1388
- 33. 창왕, 1388-1389
- 34. 공양왕, 1389-1392

- | | | |
|------------------|--------------------|-------------------|
| 1. 태조, 1392-1398 | 6. 단종, 1452-1455 | 11. 중종, 1506-1544 |
| 2. 정종, 1398-1400 | 7. 세조, 1455-1468 | 12. 인종, 1544-1545 |
| 3. 태종, 1400-1418 | 8. 예종, 1468-1469 | 13. 명종, 1545-1567 |
| 4. 세종, 1418-1450 | 9. 성종, 1469-1494 | 14. 선조, 1567-1608 |
| 5. 문종, 1450-1452 | 10. 연산군, 1494-1506 | |

여말선초, 중국과의 관계

약 1세기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온 고려 조정은 명이 건국을 선포한 1368년(공민왕 17) 이후에도 원의 잔존세력 때문에 친원(親元)·친명(親明) 양파로 갈려 확고한 외교정책을 펴지 못하고 그후 20년 동안 대명(對明) 관계는 혼미(昏迷)한 외교정책을 거듭하였다. 공민왕은 즉위 초에 원나라의 쇠퇴한 기미를 알고 자신의 몽골풍 머리(剃頭辮 髮)를 고치고, 1356년에는 원나라 기황후(奇皇后)의 오빠인 기철(奇轍) 등 원나라에 붙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죽이고, 북방의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를 찾았으며, 원의 연호를 폐지하는 등 진취적인 정책을 취하였으나 압력을 받아 다시 원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369년 명으로부터 개국을 알리는 사신을 보내오자 이를 환영하고 성준(成准) 등을 처음으로 명나라에 보내어 명태조의 성절(聖節:생일)을 축하하였고, 원의 연호 지정(至正)을 다시 폐지하였다. 1370년, 고려는 명의 홍무(洪武) 연호를 쓰기로 결정하고, 이성계(李成桂)로 하여금 원의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여 원과 절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이 북원(北元:1368년 이후 원을 북원이라 함)에서도 꾸준히 고려에 사신을 보내 회유를 계속하였고, 1374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禑王)이 즉위한 뒤 정권을 장악한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은 친원(親元)정책으로 급변했다. 이 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은 고려의 호송관 김의(金義)에게 살해되고, 북원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는 등 고려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날로 강성해가는 명의 세력

도 무시할 수 없어 고려는 명·북원에 등거리 외교로 대처하다가 1385년에 이르러 명나라의 사신이 와서 고려와의 통교(通交:通聘)를 통고하고, 공민왕에게 시호를 추증, 왕을 책봉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는 정착되었으며, 87년에는 원복(元服)을 폐지하고 명제(明制)로 바꾸었다. 1392년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려권지국사(高麗權知國事) 자격으로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또 국호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국호와 국왕의 칭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1393년에는 말 9,800필을 보내고 고려 때 명으로부터 받았던 고려국왕의 금인(金印)을 반환하였으나 명은 여진(女眞) 및 세공(歲貢)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국왕의 인신(印信)을 쉽사리 보내 주지 않다가 태종이 즉위한 1400년에 조선국왕의 고명(誥命:왕위승인문서)과 인장을 보내와 대명(對明) 외교관계는 조선왕조 수립 후 8년 만에 정상화되었다. 1408년에는 태조 이성계가 사망하자 명은 고려 공민왕 이후 처음으로 '강헌(康獻)'이라는 시호를 보내와 이후 조선은 역대의 국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명에 주청(奏請)하여 '책봉(冊封)'이라는 승인을 받았고, 국왕의 사후에는 이를 고하여 시호를 받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또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국가의 주요 대사를 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는 등 '사대(事大)'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내정·외교에 근본적인 제약이 없고 자주적이었다. 명에의 세공문제(歲貢問題)는 처음에 금 150냥, 은 700냥의 과중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른 토산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다가 29년(세종 11) 이를 면제하고 우(牛)·마(馬)·포(布)로 대신하게 하였다. 명나라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사절(使節)을 보내왔으나 조선에서는 원단(元旦)에 보내는 정조사(正朝使), 황제부부의 탄일에 보내는 성절사(聖節使)와 천추사(千秋使), 동지에 보내는 동지사(冬至使) 등 정례적으로 연 4차 사행(使行)을 보냈다. 이 밖에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변무사(辨誣使) 등을 수시로 보냈는데, 사행일행은 40여 명이 공인된 인원이었다. 이 사행에 따르는 조공은 일종의 공무역(公貿易)으로 예물과 답례물 형식으로 물물 교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사행일행이 가지고 간 물화에 의해 사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는데, 북경에서는 조선사신이 머무는 회동관(會同館)이, 서울에서는 명사가 머무는 태평관(太平館)이 사무역의 중심지였다.

조선전기 명사 조선전

- 조공 관련 기사가 양적 다수, 조공의 내용에 대해 명의 선의를 부각시켜 서술, 조공 물품 및 조공사절 회수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류.
- 국명, 연호, 책봉 등 주요 정치관계. 책봉의 경우 거부사례는 소수이고 대부분 조선의 요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 일례로 태종의 쿠데타 등에 대해 상세 내용은 서술하지 않음. 조선의 국내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 오기 사례 다수.
-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서술은 하지 않음. 철령 이북 영토문제, 채빈 살해 사례, 이인임 사례, 정도전의 표전 문제, 건주여진과 조선관계 등. 명의 위상과 군사력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각됨.

○ 조선(朝鮮)은 기사(箕子)에게 봉(封)하여 준 나라. 일찍이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에게 점거, 한무제(漢武帝)가 사군(四郡)을 설치. 후당(後唐) 때 왕건(王建)이 고씨(高氏)를 대신하여 동경(東京), 평양(平壤)은 서경(西京), 고씨에 대한 서술 등 서술 오류 지적됨.

○ 명(明)이 건국. 새서(璽書)를 내렸다. '璽書'란 皇帝의 御印을 찍은 詔書로서, 여기서는 明

太祖의 즉위조서.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冊封)하고, 역서(曆書)와 금기(錦綺)도 하사하였다.

○ 천수절 축하. 무비 정비 문제. 양무제의 사례. 불교의 지나친 숭상 경계.

○ [홍무(洪武)] 3년(A.D.1370; 高麗 恭愍王 19) 세금 부과 문제. 明代는 清代에 비해서 滯留期間·貿易·使行의 行動에까지 그 制限이 훨씬 嚴格

○ [홍무(洪武)] 5년(A.D.1372; 高麗 恭愍王 21). 高麗가 子弟入學을 請願하자 바로 許諾. 조공 회수. 고려의 의도. 內面으로는 高麗에서 必要한 物資의 輸入-貿易에 있었고 關稅·商稅免除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明側의 情報를 얻기 위함. 麗의 北元에 대한 暗暗裡의 交涉을 못마땅하게 여긴 듯한 印象. 이와 같은 明과 高麗의 距離가 멀어진 것은 明의 高麗에 대한 견제.

○ [홍무(洪武)] 6년(A.D.1373; 高麗 恭愍王 22). 禡王 卽位年 金義가 明使 蔡斌을 殺害한 事件. 해로 조공 금지는 山東以南沿岸의 情報探知를 막기 위함. 李仁人은 李仁任의 誤記. 李仁任은 高麗末의 文臣이다. 明의『太祖實錄』과『大明會典』에 朝鮮 太祖 李成桂의 父로 誤記되어 이를 是正하려는 朝鮮側의 交涉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를 宗계변무(宗系辨誣).

○ [홍무(洪武)] 8년(A.D.1375; 高麗 廢王 禡 1). 恭愍王 弑害문제·明使弑害 등으로 兩國이 對立되어 使臣을 압류시키자, 억류되었다가 禡王 4年 6월에 放任되어 돌아왔다.

○ 이후, 명과 고려의 관계 악화. 조공 거부, 고려의 화친 요구 거부 등의 기사들.

○ [홍무(洪武)] 17년(A.D.1384; 高麗 廢王 禡 10). 高麗에서는 明側의 줄기찬 固執 때문에 5年 동안의 歲貢을 一時拂하지 않는 以上 明과의 交涉이 不可能할 것을 생각. 명의 까다로운 조건. 정치적 화해는 유보.

○ [홍무(洪武)] 18년. 관계 정상화.

○ [홍무(洪武)] 19년(A.D.1386; 高麗 廢王 禡 12). 鐵嶺以北의 明 統治問題는 高麗와 明關係를 다시 惡化시킨 契機. 鐵嶺은 咸鏡道와 江原道の 境界上에 있었던 것

○ [홍무(洪武) 21년(1388)] 위화도 회군. 明이 鐵嶺衛의 設置를 通告해 오자, 八道都統使가 되어 遼東征伐을 斷行. 이성계의 아들 살해 부분은 오류.

○ [홍무(洪武)] 25년(A.D.1392; 朝鮮 太祖 1) 9월, 주문(奏文)의 내용과 태조의 즉위. 조선국호. 책봉.

○ [홍무(洪武)] 26년 (A.D.1393; 朝鮮 太祖 2) 2월, 成桂에서 '묘'으로 改名한 것과, 그 更名의 請願에 대해서. 조선측의 기록에는 없음.

- [홍무(洪武)] 28년 (A.D.1395; 朝鮮 太祖 4) 황제는 표문(表文)의 언사(言辭)가 오만하다고 하여 힐책. 정도전의 표문 문제 발생.
- 건문(建文) 연간(年間)(A.D.1399~1402; 朝鮮 定宗 1~ 太宗 2) 태종책봉.
- 영락(永樂) 원년(A.D.1403; 朝鮮 太宗 3) 황제는 중국(中國)의 예제(禮制)를 따르려 함을 가상히 여겨...공헌(貢獻)이 일년에 4~5차례
- [영락(永樂)] 6년(A.D.1408; 朝鮮 太宗 8)世子 李禔(14歲)는 太宗 7年 9月 乙亥에 賀正하기 위해서 明으로 出發. 處女の 進獻은 明代에도 繼續.
- [선덕(宣德)] 4년(A.D.1429; 朝鮮 世宗 11) 표현과는 달리 태종대부터 걸친 요청이 간신히 접수된 상황.: 도(禱)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금과 옥으로 만든 기물(器物)은 그대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증지하고, 토산물로써 성의를 보이면 될 것이오.”
- 정통(正統) 원(元)(즉위,即位)년(A.D.1436; 朝鮮 世宗 18) 3월, 세종의 여진, 희유, 강압책. 여진에 대한 명의 경계심. 와랄(瓦剌). 서북몽고계. 오이라트. 위랍특. 이야기.
- [정통(正統)] 13[4]년(A.D.1448; 朝鮮 世宗 30) 正統帝 英宗은 그 14年 8월에 瓦剌 也先의 中國侵入을 迎擊하기 위해서 50餘萬의 軍을 이끌고 親征했으나, 土木堡에서 包圍되어 8月 壬戌(15日)에 捕虜된 사건
- [경태(景泰)] 2년(A.D.1451; 朝鮮 文宗 1) 겨울, 건주 두목(建州 頭目)이 몰래 조선(朝鮮)과 통교(通交)하므로, 향(珣)에게 경계하여 그들과의 왕래를 끊게 하였다.[註311] [경태(景泰)] 3년 (A.D.1452; 朝鮮 文宗 2) 가을, 향(珣)이 졸(卒)하였다고 부고(訃告)를 알려 오자, 환관(宦官)을 파견하여 조제(弔祭)케 하고 공순(恭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는[註312] 한편, 유(瑀)[향(珣)]의 아들 흥위(弘曄)로 하여금 뒤를 이어 즉위하도록 했다.[註313] 흥위(弘曄)는 3년 동안 재위(在位)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어릴 때부터 병약하다 하여 그의 숙부 [이(李)유(瑀)] [註314]에게 국사를 맡기겠다고 청원하였다.[註315]
- [경태(景泰)] 7년(A.D.1456; 朝鮮 世祖 2) 세조왕위찬탈. 世祖는 明側の 態度를 觀望하면서 對 明關係에서는 如前히 端宗 名儀로 諸般 表文을 올림.
- 세조조에 건주여진과의 관계. 명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관망하는 형세.
- 성화(成化) 원(元)년(A.D.1465; 朝鮮 世祖 11) 조명 합동작전. 건주 여진 격퇴. 朝鮮은 明의 援兵要求에만 順應하기 위한 消極的인 派兵이 아니라, 이런 機會를 利用한 積極的인 派兵. 이후 요동 경영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 추세.
- [성화(成化)] 11년(A.D.1475; 朝鮮 成宗 6) 건주(建州) 야인(野人)들의 침략. 외국과의 병기(兵器) 무역(貿易)은 금함.

○ [성화(成化)] 15년(A.D.1479; 朝鮮 成宗 10) 10월에 혈(契)에게 군사를 출동시켜 건주(建州) 여직(女直)을 협격

[홍치(弘治)] 12년(A.D.1499; 朝鮮 燕山君 5) 요동수비문제. 海島·海浪島란 金州衛·盖州衛管轄의 海島들이었다. 특히 72島 중에서도 最大島인 海浪島에서의 문제가 많았다고 함.

○ 정덕(正德) 2년(A.D.1507; 朝鮮 中宗 2) 中宗反正 후의 對明關係는 마치 世祖篡奪 후의 경우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明에 대해서는 燕山君 自身이 讓位하는 것으로 꾸몄다.

○ 종계변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 가정(嘉靖) 2년(A.D.1523; 朝鮮 中宗 18) 『中宗實錄』에 의하면, 이 무렵에 倭寇의 作亂이 우심해짐.

○ [가정(嘉靖)] 25년(A.D.1546; 朝鮮 明宗 1) 海禁의 具體的인 禁令에 대한 논의. 복건성의 해금정책 문란. 무기 기술 유출 등의 우려.

○ [태학(太學)에서의] 행례(行禮)에 참관. 明代에 朝鮮使臣이 北京에서 滯留할 수 있는 期間은 原則的으로 40日로 制限(清代에는 약 60일까지-拙編, 『燕行錄記事分類』(未刊)에 의함)되어 있었으므로, 北京에 到着한 후 40日이 超過할 어떤 來使의 경우

○ [만력(萬曆)] 17년(A.D.1589; 朝鮮 宣祖 22) 대유구국(大琉球國)[註491]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해안에 왔기에 그 남녀(男女)를 모두 경사(京師)에 압송하여 왔으니, 문증(文證)을 주어 석방 귀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琉球는 冲繩에 있던 나라를 말한다. 琉球가 歷史上 그 存在를 나타내게 된 것은 14世紀 이 후의 일이다. 15世紀에 들어서 中國·韓國·日本·東南亞 등에서 貿易을 하기 시작했다. 明이 建國하자 朝貢關係를 맺어서 安南國과 같이 韓國에 버금하는 待遇를 받았다. 明에서는 그 國王에게 鍍金銀印을 賜與하기도 했음.